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25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 문진석 • 이춘석 • 이연희

박정현 • 조인철 • 이정문

박용갑・김문수・김윤덕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숲길 종류별로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 공원 등에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맨발걷기는 발바닥의 지압효과 및 접지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숲길에도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 ②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		
	함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숲	<u>⑤</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길조성계획의 수립, 타당성 평			
가의 절차,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지정			
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